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8.(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6. 8. 21.

○ 회부일 : 2022. 8. 24. (의안번호 : 26-96)

2. 제안이유

○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함에 따라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총정원을 조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479명에서 1,482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 정원을 1,441명에서 1,444명으로 조정(안 제2조)

○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정비(안 별표 3)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6. 8. 6. ~ 8. 12.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함에 따라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총정원을 조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총정원 증원)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정원 증원

- 총 정원: 1,479명 → 1,482명 (3명 증)

※ 아동학대 전담 인력(1), 사회연대경제 인력(1), 체납관리단 인력(1)

○ (직급 조정) 사업소장 직급 책정을 위한 직급별 정원조정

- 본청 4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으로 조정

○ 사업소 정원 확정: 총 23명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23	1	4	5	6	7
행 정	5		2	1	1	1
행정 또는 사서	16	1	2	4	3	6
전 산	1				1	
방송통신	1				1	

※ 사업소 정원 23명은 기존 평생학습과 도서관 업무 담당 정원을 이관하여 구성하며, 사업소 설치에 따른 별도의 정원 증원은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함에 따라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총 정원 1,479명에서 1,482명으로 3명 증원된 내용으로 아동학대전담 인력(1), 사회연대경제 인력(1), 체납관리단 인력(1)이며, 사업 소장 직급 책정을 위한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본청 4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으로 조정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조직 및 정원조정, 추가재정 소요,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 여부 및 평생교육 업무의 사무분장등으로 중앙도서관 이용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발생요인: 직급 조정 및 기준인력 순증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비용 추계

(2) 관련조문: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2. 비용추계의 전제

- 26년 직급별 인건비 세출예산 편성 기준 반영(기본급, 각종 수당 등 포함)
- 정원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2027년 세출예산 편성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계(누계) : 667,163천원

나. 연도별 비용 추계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세 출 (인건비)	126,672	129,965	133,345	136,812	140,369	667,163
인상률 (전년대비)	-	2.6%	2.6%	2.6%	2.6%	-

※인상률 산정기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5. 추가의견 : 비용추계의 세부 세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 성 자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윤지현 (☎8217)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82	1,48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71	1,471				
3급	1	1				
4급	9	7	1	1		
5급	68	39	1	11	1	16
6급 이하 계	1,392	1,392				
전문경력관 계	1	1				
별정직 계	9	9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계	7	7				
연구직 계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7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482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1,441명	1. ---------- 1,444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79	1,479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68	1,468			
3급	1	1			
4급	10	8	1	1	
5급	67	39	1	11	16
6급 이하 계	1,389	1,389			
전문경력관 계	1	1			
별정직 계	9	9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계	7	7			
연구직 계	1	1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482	1,48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71	1,471				
3급	1	1				
4급	9	7	1	1		
5급	68	39	1	11	1	16
6급 이하 계	1,392	1,392				
전문경력관 계	1	1				
별정직 계	9	9				
5급 상당	2	1	1			
6급 상당 이하 계	7	7				
연구직 계	1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3.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